

보건소에 대한
부분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고 성 군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부분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18. 3. 20.(화) ~ 3. 23.(목), 4일간
- 감사대상: 보건소
- 감사인원: 기획감사실장 외 4명
- 감사범위: 2016. 6. ~ 2018. 3. 감사일 현재까지 보건소업무 전반
- 주요 감사내용
 - 각종 주요시책, 지시사항 이행여부
 - 예산과 회계처리 및 물품관리실태
 - 각종 세수 부과·징수 실태
 - 각종 민원처리의 관련법규 및 절차 이행여부
 - 진료 등 보건행정 전반
 - 기타 복무실태 등

II. 감사성과

- 행정상·재정상 조치

| 구분 | 행 정 상 (건) | | | | 재 정 상 (건,원) | | | | |
|----------|-----------|----|----|----------|-------------|-----------|----|-----------|---|
| | 계 | 시정 | 주의 | 현지 조치 | 계 | 회수 | 추징 | 감액 | |
| 처분 요구 | 9 | 3 | 4 | 2 | 건수 | 1 | 0 | 1 | 0 |
| | | | | | 금액 | 1,000,000 | 0 | 1,000,000 | 0 |

- 신분상 조치 : 훈계 5명, 주의 4명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 일련 번호 | 건 명 | 요 구 내 용 | | | 비고 |
|----------|--|------------|-----|-----------|-----------|
| | | 행정상 | 재정상 | | |
| | | | 구분 | 금액(원) | |
| 1 | 진료수입관리 부적정 | [주의] | | | |
| 2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사전통보 및 불이행 의료기관 행정처분 미이행 | [시정] | 추징 | 1,000,000 | |
| 3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배달 확인업무 소홀 | [주의] | | | |
| 4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폐업 통보업무 소홀 | [시정] | | | |
| 5 | **통합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 [주의] | | | |
| 6 | 예산집행 부적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03)] | [주의] | | | |
| 7 | 공공근로사업 작업일지(일일점검표) 작성의무 불이행 | [현지 조치] | | | |
| 8 | 인지세법에 따른 소인의무 소홀 | [현지 조치] | | | |
| 9 | 임산부 주차장 설치 부적정 | [시정] | | | |
| 합 계 | | 계 | 9 | 계 | 1,000,000 |
| | | 시정 | 3 | 회수 | 0 |
| | | 주의 | 4 | 추징 | 1,000,000 |
| | | 현지조치 | 2 | 기타 | 0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1 |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 액(원) | |
| 보건소 | 2017 | 주의 | - | - | - |

제 목 : 진료수입관리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진료수입 납부현황】

| 연 번 | 세입과목 | 진료일자 | 진료수입 | 발의일자 | 납부일자 | 정상수납일 | 기간 경과 |
|-----|--------------|------------------|--------|-------------|-------------|------------|-------|
| 1 | 보건지소 진료수입 | 2017.1.5. | 28,800 | 2017.1.9. | 2017.1.9. | 2017.1.8. | 1 |
| 2 | “ | 2017.2.9.~2.14. | 13,930 | 2017.2.21. | 2017.2.22. | 2017.2.10. | 12 |
| 3 | “ | 2017.2.15.~2.20. | 16,400 | 2017.2.21. | 2017.2.22. | 2017.2.16. | 6 |
| 4 | “ | 2017.3.17. | 900 | 2017.3.22. | 2017.3.22. | 2017.3.18. | 4 |
| 5 | “ | 2017.4.25. | 17,300 | 2017.4.27. | 2017.4.27. | 2017.4.26. | 1 |
| 6 | “ | 2017.5.31. | 16,400 | 2017.6.2. | 2017.6.2. | 2017.5.31. | 2 |
| 7 | 일상경비 이자수입 | 2017.7.7. | 2,000 | 2017.7.11. | 2017.7.11. | 2017.7.10. | 1 |
| 8 | “ | 2017.8.2. | 4,230 | 2017.8.7. | 2017.8.7. | 2017.8.3. | 4 |
| 9 | “ | 2017.11.1. | 40,900 | 2017.11.3. | 2017.11.3. | 2017.11.2. | 1 |
| 10 | 보건지소 진료수입 | 2017.11.8. | 14,600 | 2017.11.8. | 2017.11.13. | 2017.11.9. | 4 |
| 11 | “ | 2017.12.5. | 900 | 2017.12.11. | 2017.12.11. | 2017.12.6. | 5 |

【내 용】

-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수납금의 납입)에 따르면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만보건지소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진료수입 11건 156,360원을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2일까지 지연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보건지소 진료수입을 2017.7.~2017.10.까지 일상경비이자수입으로 세입처리 하는 등 진료수입 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2 | | 감사담당자 | | | |
| | | 직급 | 지방행정주사 | 성명 | !!! |
| 소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보건소 | 2016~2018 | 시정 | 추징 | 1,000,000 | - |

제 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사전 통보 및 불이행 의료기관 행정처분 미이행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의료기관 수 | 장비 수 | 정기검사 사전통보 여부 | 정기검사 이행 | | 비고 |
|-------------------|-------------------|--------------------------|---------|-----|--------------------------|
| | | | 이행 | 불이행 | |
| && 치과의원 등 27개소 | 치과용 파노라마 등 55개 | 2015.1.14.이후 사전통보 미이행 | 53 | 2 | 감사일 현재 사전통보 대상 도래: 5건 |

【내 용】

- 「의료법」 제37조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신설 2010.1.22.>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제37조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 의료기관에 검사

일 2개월 전에 통보를 하여야하나 2015년 1월 14일 통보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고성읍 소재 &&치과의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파노라마용, 치과일반용)가 각각 2016.12.16., 2016.12.23. 정기검사 예정일이나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제2항 및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능 발생장치)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2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대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통보를 하고 불이행 의료기관(&&치과의원)에는 「의료법시행령」 제45조(과태료부과 기준)[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1,000,000원 추징¹⁾하고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1)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절차를 지켜 이행바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3 |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보건소 | 2017 | 주의 | - | - | - |

제 목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배달 확인업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식품배달 현황】

| 연번 | 배달 일자 | 수혜자 | 수령자 | 통화내용 기재 여부 | 관계표시 여부 | 비고 |
|----|-------------|-----|------|---------------|------------|----|
| 1 | 2017. 1. 4.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2 | 2017. 1.18.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3 | 2017. 1.18. | +++ | 현관안에 | 미기재 | 미표시 | |
| 4 | 2017. 1. 4. | --- | 김희진 | 미기재 | 미표시 | |
| 5 | 2017. 1.18.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6 | 2017. 2. 1.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7 | 2017. 2.15.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8 | 2017. 2. 1.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9 | 2017. 2.15.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10 | 2017. 2. 1.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11 | 2017. 3. 8.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12 | 2017. 3.22.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13 | 2017. 4. 5. | +++ | 문앞 | 미기재 | 미표시 | |
| 14 | 2017. 5.10.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15 | 2017. 6.21. | +++ | 관리실 | 미기재 | 미표시 | |
| 16 | 2017. 6. 7.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17 | 2017. 7. 5.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 18 | 2017. 8. 2. | +++ | 미표시 | 미기재 | 미표시 | |
| 19 | 2017. 8.16. | --- | 미표시 | 미기재 | 미표시 | |
| 20 | 2017. 9.20. | +++ | 미표시 | 미기재 | 미표시 | |
| 21 | 2017. 9. 6. | --- | 경비실 | 미기재 | 미표시 | |
| 22 | 2017. 9.20. | +++ | 경비실 | 미기재 | 미표시 | |
| 23 | 2017.11.22. | --- | 미표시 | 미기재 | 미표시 | |
| 24 | 2017.12. 6. | --- | 현관 | 미기재 | 미표시 | |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2017. 4.]

11., 일부개정]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2017년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식품 구입(단가계약)의 식품공급·배송 업체선정 과업지시서를 보면 ‘바.대금청구 및 지급·정산조건(일반조건)’을 보면
 - 1) 물품 공급시 품목과 수량이 명시된 식품배달확인증에 수령자의 서명을 필하여 배달완료 보고서 첨부하도록 한다.(단, 수령인의 서명이 없는 인수증은 미배송건으로 처리한다.)
 - 2) 수령자의 부재로 수령자가 직접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령자와의 통화내용 및 사유를 기록하고, 반드시 대리수령자에 대하여 대상자의 관계 및 성명, 서명을 받아야 한다.
 - 3) 공급당일 미 수령 가구의 경우 수령자 연락 후 1일 이내에 재방문하여 배달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 보건소에서는 위와 같이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금 청구 시 식품배달 확인증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았으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수령자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서명을 누락하거나 현관에 두거나 대리수령자(경비실) 수령 시 전화통화 내용과 사유, 대리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기재하지 않는 등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배달 확인업무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4 | 감사담당자 | | | | |
| | 직급 | 지방시설주사보 | 성명 | !!! | |
| 소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보건소 | 2017~2018 | 시정 | - | - | - |

제 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폐업 통보업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폐업신고 현황】

| 연번 | 상호명 | 소재지(도로명) | 처리일자 | 통보여부 | 비고 |
|----|-----|---|------------|------|------|
| 1 | +++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 2층 | 2018-02-26 | 부 | 영업신고 |
| 2 | ---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 | 2017-10-17 | 부 | 영업신고 |
| 3 | +++ |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 | 2017-08-11 | 부 | 영업신고 |
| 4 | ---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번길 68 | 2017-05-01 | 부 | 영업신고 |
| 5 | +++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 102,103호 (++++아파트) | 2017-03-30 | 부 | 영업신고 |
| 6 | ---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 (+++더파크) | 2017-02-17 | 부 | 영업신고 |
| 7 | ---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 | 2017-01-04 | 부 | 영업신고 |
| 8 | +++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3 (++++아파트) | 2017-03-30 | 부 | 폐업신고 |
| 9 | ---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번길 23 | 2016-12-29 | 부 | 폐업신고 |
| 10 | +++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 | 2017-01-03 | 부 | 폐업신고 |
| 11 | --- |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 | 2017-08-02 | 부 | 폐업신고 |
| 12 | +++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 | 2018-03-09 | 부 | 폐업신고 |

【내 용】

-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추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전교육 이수 등,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및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에 따라 판매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판매자로 등록된 자가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한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폐업·업무재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2017년~2018년 기간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폐업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7.1.4. 판매신고 수리한 ‘+++ 고성 오거리’ 등 12개 판매점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제2항 및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제4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등록·폐업·업무개시 사항 등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12개 판매점의 등록·폐업 신고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폐업 통보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의 신고사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 후 결과를 제출하고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5 |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보건소 | 2016 | 주의 | - | - | - |

제 목 : **통합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시설부대비 집행 현황】

| 건 명 | 집행액 (천원) | 지급처 | 시행일자 | 비고 |
|--|-------------|------------|------------|-------------|
| **통합보건지소 개보수관련 부지 경계 측량 수수료 지급 | 814 | ++++++고성지사 | '16.6.27. | 경계측량 |
| **통합보건지소 개보수 공사현장 이동식화장실 정화조 분뇨 수거료 지급 | 40 | (주)+++환경 | '16.8.29. | 이동식화장실 분뇨처리 |
| **통합보건지소 외벽 청소 시행 | 770 | ++++청소대행 | '16.11.28. | 시설물 외벽 청소 |

【내 용】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로 전용·이용·이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도로, 철

도,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 되는 부대경비로서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공사감독 여비·체제비·피복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복구비로서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 할 수 있으며,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로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016년도 보건소에서 시설부대비로 집행한 ‘**통합보건지소 개보수공사 관련 부지 경계 복원측량 지급’ 등 3건의 경우,

- 부지 경계복원 측량은 시공의 범위가 인접 토지소유자의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적경계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보건지소개보수 공사현장 이동식화장실 정화조 분뇨 수거료 지급’은 당해 공사중 보건소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의 분뇨를 처리하는 내용이며, ‘**통합보건지소 외벽 청소’는 2016.10.19. 준공검사 이후인 2016.11.2. 운영 중인 **통합보건지소의 외벽을 청소하는 용역으로서 2건 모두 관서운영비 성격이므로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 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201-01)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설부대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i>NO.</i> 6 | 감 사 담 당 자 | | | | |
| | 직 급 | 지방시설주사보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보건소 | 2017 | 주의 | - | - | - |

제 목 : 예산집행 부적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 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에 집행대상을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보건소에서는 *****과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없음에도 각종 보건진료장소대여 협조 등의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2016.6.24. ‘***** 회장 취임 축하용 화분’(금50,000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입하는 등 예

산집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7 | 감사담당자 | | | | |
| | 직 급 | 지방시설주사보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보건소 | 2017 | 현지 조치 | - | - | - |

제 목 : 공공근로사업 작업일지(일일점검표) 작성의무 불이행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사업명 | 년도 | 참여자수 | 참여기간 | 일일점검표 | 비고 |
|------------|---------------|------|---------------|----------|----|
| 공공근로 사업 | 2018년도 상반기 | 2 | 2018.1.15.~6월 | 미작성, 미비치 | |

【내 용】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는 작업장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일일점검하여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보건소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업일지(일일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8 | 감사담당자 | | | | |
| | 직 급 | 지방시설주사보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보건소 | 2016 ~ 2017 | 현지 조치 | - | - | - |

제 목 : 인지세법에 따른 소인의무 소홀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연도 | 건 명 | 전자수입인지 | | 비고 |
|------|---------------------------|------------|-------------------|-----------|
| | | 발급일자 | 고유 번호 | |
| 2016 | 방역소독 민간위탁 | 2016.5.30 | 1601142-0638133++ | 소인 미처리 |
| 2016 | 보건소 1층 리모델링공사 | 2016.2.23 | 1601102-0200380++ | 소인 미처리 |
| 2017 |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 | 2017.10.11 | 1701100-1263233++ | 소인 미처리 |
| 2017 | 흡연예방 프로그램 | 2017.5.25. | 1701134-0653525++ | 소인 미처리 |
| 2017 | 고성군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가입 차수별 계약 | 2017.1.19. | 1701124-0088784++ | 소인 미처리 |
| | | 2017.1.19. | 1701124-0088784++ | 소인 미처리 |

【내 용】

○ 「인지세법」 제8조(납부)제1항에서는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30.>

- 같은 법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라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보건소에서는 상기 계약 6건을 체결하면서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첨부 제출받았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미소인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방역소독 민간위탁’등 6건을 포함한 미소인 된 인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소인처리하고
- ▶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 | | | | |
|-------|-------|---------|-------|-------|-------|
| NO. 9 | 감사담당자 | | | | |
| | 직 급 | 지방행정주사보 | 성 명 | !!! | |
| 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조치방법 | 금액(원) | |
| 보건소 | 2017 | 시정 | - | - | - |

제 목 : 임산부 주차장 설치 부적정

1. 위법·부당내용

【현 황】

| 관리부서 | 설치현황 | 설치기준 | 비고 |
|------|-------------------------|--------------------------|----|
| 보건소 | 임산부 주차장 1대 (2.7m*5m) | 가로: 3m*5m 색상: 분홍색, 흰색 | |

【위법·부당내용】

-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3항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의무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별표1에서는 임산부전용 주차장 주차구획에 대해 규격(가로3m×세로 5m), 색상(분홍색, 흰색)을 명시하고 있고, 제5조(주차안내 표시 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용이한 장소에 별표3의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규격 미달(한쪽의 가로가 2.7m로 기준 미달)하였고, 바탕색은 흰색이 아닌 아스콘 색상(검은색)을 그대로 사용하여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사실이 있으며, 주차안내표지판은 주차장 진입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반대로 설치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2. 처분요구

- ▶ 관련 법규에 규정된 설치기준을 준수하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시정)